

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
제1 차 산업건설위원회(2026. 8. 26.)

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[전문위원 전 병 준]

<의안번호 제2026 - 92호>

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6. 8. 14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6. 8. 18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- 「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나. 운용방침

-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
-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- 총괄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 - 운용부서 : 각 기금관리운용 관·과·소
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다. 기금조성현황(산업건설위원회 소관)

기 금 명	2025년도 말 조 성 액 ㉠	2026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6년도 말 조 성 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㉤=㉡-㉠
		수 입㉢	지 출㉣		
합 계	4,829,775	1,058,105	1,555,150	4,332,710	△497,045
재난관리기금	3,322,264	987,500	1,460,550	2,849,214	△473,050
옥외광고발전기금	372,826	38,268	74,600	336,494	△36,332
체육진흥기금	1,134,665	32,337	20,000	1,147,002	12,337

4.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

가. 옥외광고발전기금

1)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구 분	'25년도말 조성액 ㉠	'26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6년도말 조성액 ㉡=㉢+㉠
		수입㉢	지출㉣	증감 ㉤=㉢-㉣	
옥외광고발전기금	372,826	38,268	74,600	336,494	△36,332

2) 수입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411,094	402,094	9,000	
보조금	9,000	-	9,000	시·군 특별조정교부금 (옥외광고물 무연고 노후 간판 철거)
예치금회수	372,826	372,826	-	
이자수입	5,268	5,268	-	
기타수입	24,000	24,000	-	

3) 지출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411,094	402,094	9,000	
비용자성사업비	74,600	34,600	40,000	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20,000천원×2개소
예치금	336,494	367,494	-31,000	

5. 검토의견

-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·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.
- 우리군은 「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」에 관리·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2010년부터 설치·운용하고 있음.
- 이번 변경안은 특별조정교부금 9,000천원을 신규 반영하고,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설치를 위해 40,000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-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연계성이 있으나,
- 개소당 20,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설치 위치 및 이용수요, 기존 게시대의 이용률,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특히, 신규 시설 설치가 실제 현수막 게시 수요 해소와 불법 현수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업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
-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일반회계가 아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
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□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[시행 2025.05.07]

제2조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) ①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개선사업
2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3. 간판 제작·설치 지침 개발사업
4. 그 밖에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